

철도장비관리 및 검수내규(발췌)

2014.12.26 내규 제541호

제4조 대상장비

1. 철도중장비 : 레일탐상차, 궤도 검측차, 레일연마차, 모터카, 고압살수차, 멀티플타이탬퍼
2. 철도경장비 : 파워렌치, 핸드타이탬퍼, 발전기, 레일탐상기, 레일천공기, 레일절단기, 레일연마기, 후로삭정기, 트레일러 및 트로리, 선로정정기, 시설지원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 및 기술사업소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이 별도 지정하는 장비, 순회점검차, 철도장비 부속 장비

제6조 검수종류 및 주기

1. 일상검수 : P/L 책임 하에 장비 취급자가 시행하는 검수로서 장비 사용 전후의 기능점검 주유, 청소, 경미한 정비 등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.
2. 정기검수 : 단장(궤도장비부장(이하“부장”이라 한다)) 및 소장 책임 하에 장비의 일부 또는 전반에 걸쳐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검수를 말한다. 단, 철도경장비에 대하여는 월별 검수(순회점검차 제외)를 생략한다.

제7조 검수 종류별 기준

장비의 검수 종류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. 단, 검수 시기 및 검수시행 부서는 검수능력 등을 감안하여 단장 및 소장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검수종류	검 수 기 준
일상검수	매 작업 전후 또는 장비이동 전후 시행(<u>단, 철도경장비는 월 2회 이상 시행</u>)
월별검수	100시간 가동 후 또는 1개월 운용 후 시행
1년검수	1,200시간 가동 후 또는 1년 운용 후 시행
임시검수	돌발적인 고장 발생 시 또는 고장 우려가 있을 때 시행
특별검수	사장 지시사항에 의거 시행

제8조 검수시행

검수는 제7조의 가동시간 또는 운용기간 중 먼저 도달된 기준에 따라 시행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운용기간 계산 시 고장, 우천 그 밖의 이유로 운용하지 못한 일수는 공제한다.
2. 검수는 검수 시행일 기준 기간의 15% 가감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.

제9조 검수생략

월별 검수 이상의 검수를 시행한 장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하급검수를 시행한 것으로 한다.

검수종별	월검수	1년검수
일상검수	○	○
월별검수		○

제11조 장비검수계획

1. 단장 및 소장은 다음 연도 장비검수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매년 10월 15일 까지 사장에게 보고 하고 사내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.
2. 단장 및 소장은 장비검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장비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.

제12조 검수시행 절차

단장(부장) 및 소장 책임 하에 장비검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.

1. 장비검수는 별도의 점검표에 따라 시행하고 점검 및 정비사항을 사내 전산망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2. 일상검수 이외의 검수를 시행한 경우에는 시험운전을 하여 장비의 성능상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투입시켜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재검수를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3조 정기보고

1. 단장은 연간 장비검수 실적을 모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